

2022. 9. 1. 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교장 공모 재공고

「2022. 9. 1. 자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」에 의거 2022. 9. 1. 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교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, 희망자는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6. 2.

광주광역시교육감



I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

순	학교명	학급수	전화번호	주소 및 홈페이지	공모 형태	자격
1	상무고	26(3)	(062) 600-1334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32번길 28 http://sangmu.gen.hs.kr/	내부형	교장자격소지자 또는 교육경력 15년 이상 (교육공무원)

※ 학교 공고문은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공지

※ 학급수의 ()는 특수학급 수

II 임용 기간

2022. 9. 1. ~ 2026. 8. 31. (4년)

(단, 교장으로 처음 임용된 자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는 정년 퇴직일까지)

III

응모 자격

□ 일반 요건

- 교장 임용 예정일(2022. 9. 1.)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(단,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 자 지원 가능)

유형	자격 기준	대상학교
내부형(B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국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 및 임용 예정일까지 교장자격증 소지 예정인 자 (국·공립 대학 교원 제외) · 광주광역시 소재 국·공립 중등학교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	상무고등학교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각호로 규정된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규정된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징계처분 받은 교원은 징계기록 말소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
 - 교원 4대 비위자(금품·향응 수수, 상습폭행, 성폭행(성관련 비위), 성적 조작) 또는 그에 준하는 비위, 음주 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 없이 배제
 - * 2022. 1. 1.부터 음주운전(음주측정 불응 포함)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·처분 받은 자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제외(2022. 3. 1.자 교장 임용부터 적용)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 시효가 5년인 징계를 받은 자는 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배제
- 학교문화혁신 및 혁신학교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자
- 기타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

□ 일반 요건 외 학교 요건

연번	학교명	교장 공모 응모 자격 외 학교의 특별 요건
1	상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래지향적인 학교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소통과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학교문화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자 ○ 학생들 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자 ○ 학교 자치의 내실화를 통해 민주적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자 ○ 학교 구성원이 공감하는 교육철학으로 학생의 인성과 교직원의 화합을 중시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

□ 지원 제한 요건

○ 임용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자

- 단,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자 가운데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

▪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

○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**현 재직교 교원이 현임교 응모 불가**

○ 현임 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

- 단, 학교 통·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

○ 현임 수석교사는 교장 공모 지원 불가

※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9조의4 제4항에 의거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, 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

○ 현 재직교 교장 공모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

○ 교육공무원법 제21조(전직 등의 제한)의 제한 요건 해당자

○ 지원자는 1개교만 지원 가능

○ 초등교장자격증 소지자와 중등교장자격증 소지자, 초등학교 근무교사와 중등학교 근무교사 간 학교급별 교차 지원 불가

IV

공모 범위

 내부형 공모

- 광주광역시 소재 국·공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
- 내부형(B): 중등학교 교장 자격 소지자 (2022. 8. 31. 이전 교장 자격 발급 예정자 포함) 또는 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

V

재공고 기간

 재공고 기간: 2022. 6. 2.(목) ~ 6. 7.(화)

- 기존 지원자는 당해 재공고에 지원한 사람으로 인정함
- 재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거나(1차 공고 포함) 적격자가 없는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교장공모 지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, 지원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친 후 단수 임용 추천 가능함
- 공모 요건, 심사 일정 등을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

VI

접수 기간 및 장소

- 접수 기간: **2022. 6. 2.(목) 09:00 ~ 6. 7.(화) 12:00까지**
- 접수 장소: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(3층)
- 접수 방법: **직접 접수**(우편접수 불가) * 공문 제출하지 않음
※ 지원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일 전일까지 심사위원에게 비공개함

VII

지원자 제출 서류

※ 서식 2, 3, 4의 20부는 본인의 이름과 소속 및 직위를 익명화하여 제출

1. [서식1] 교장공모 지원서 2부
2. [서식2] 경력 및 주요 활동 실적 20부
3. [서식3] 자기소개서(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경력 중 혁신적 실적 중심) 20부
4. [서식4] 학교경영계획서 20부
5. [서식5] 사실확인서(서약서) 2부
6. [서식6] 추천서(국립학교 교원에 한함, 추천자-소속 대학총장)
7. 경력증명서 2부 (※ ‘교장공모 지원서’ 중 ‘일반경력’ 의 경력증명 제출자에 한함)
8. 교장 자격증 사본 2부(해당자만 제출)

※ 응모일 현재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중 **2022. 8. 31.이전** 발급 예정자만 해당자로 응모 가능하며, 추후 교장 자격증 발급 시 반드시 제출

9.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2부(임용일 기준, 최근 1년 이내)
10.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(A4 20매 이내) 2부
11. 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20부
12.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원본 파일 USB 1매

- 파일이름(예시): 1. 20220901_자기소개서_지원학교명_본인성명
- 2. 20220901_학교경영계획서_지원학교명_본인성명

※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를 금지하며, 특정 인사 및 단체 가입 여부 또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기재 시, **심사에서 감점 등 불이익 부여**

■ 학교 심사(50점) 및 교육청 심사(50점) 최종 점수에서 각 5점 감점

■ 기재금지 사항 예시: 특정 인사 실명, 교원단체 실명,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

■ 개인 신상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은 ○○으로 처리

■ 익명화 기준: 소속, 직위, 성명, 나이, 학력, 근무지역, 소속 단체 등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(사진이나 그림 포함) 모두 익명 처리

13. 성범죄경력·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(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제출하지 않음)

14. NEIS 인사기록카드 전체 출력본(1면 상단 본인 서명) 2부 ※교감 원본대조필

- 인쇄 방법: NEIS-나의 메뉴-인사기록-기본사항
- 인사카드 구분- '인사카드(전체)' 항목 선택 - 출력, 2쪽 모아찍기, A4 단면 인쇄



VIII 심사 일정(예정)

□ 일정

구분	내용	심사 일자 및 장소	주관	비고
학교 심사	발표 및 서류 심사, 면접심사 등	○ 일자: 2022. 6. 15.(수) ○ 장소: 해당학교 또는 해당학교가 정하는 장소	• 학교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<u>공모교장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</u>	심사기간은 해당 기관의 별도 계획에 따르며, 변경될 수 있음
교육청 심사	서류 심사, 면접심사, 상호토론 등	○ 일자: 2022. 6. 23.(목) ○ 장소: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하는 장소	•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	

※ 위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1차 접수 결과 모든 학교 지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학교, 교육청 심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※ 학교 심사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육(지원)청 감독관이 심사 시 입회하여 관리

※ 교육청 심사 대상자 통지: 유선으로 개별 통지(학교 심사 후 2일 이내)

□ 심사 방법

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에 대한 서류 및 발표심사와 면접심사, 상호토론 등을 통하여 「학교경영 능력」을 종합적으로 심사

※ 응모자는 자기소개서에 기록한 실적을 증빙할 자료 반드시 첨부

※ 지원자 제출 서류 표절 여부 점검

○ 서류 접수 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, 학교경영계획서를 파일로 접수

○ 표지에만 지원학교명, 응모자 소속교명, 응모자명 표기함. 내용 중 개인의 인적사항이 나타난 부분은 ○○로 표기

- 자기소개서,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정 인사 및 단체와의 연관성 등은 기재 불가하며,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만점의 10% 이상 감점 조치 등 실시

■ 학교 심사 및 교육청 심사 최종 점수에서 각 5점 감점

■ 기재금지 사항 예시: 특정 인사 실명, 교원단체 실명, 특정 교원단체 소속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단체명 등

■ 익명화 기준: 소속, 직위, 성명, 나이, 학력, 근무지역, 소속 단체 등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모두 익명 처리

○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경영계획서를 익명화하여 접수 마감일부터 심사 당일 까지 해당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

○ 학교경영계획서는 교육청 심사 당일(심사 시작 후) 원본으로 교체하여 임용일까지 공지

○ 제출 서류가 교육청 공모교장 표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 공모교장 자격 박탈, 임용추천 취소, 향후 공모교장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, 추후라도 징계 등 엄중 조치

※ 2014. 9. 1.자부터 공모교장 지원 서류는 전국 단위의 표절 검증 실시

□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심사 절차

○ 2022. 9. 1.자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[중등교육과-10705(2022. 4. 19.)] 및 별도 학교 계획에 따름

□ 이의제기 신청 기간: 2022. 6. 24.(금) ~ 2022. 6. 30.(목)

- 인사클린센터 홈페이지(인사정책/교장공모제/이의신청 탭) 활용
- 심사과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

IX 임용 추천

□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

-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점수·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를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
- 지원자가 2인 이하일 경우,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청 심사대상자로 추천
- 심사 결과, ‘지원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하다’ 고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공모학교 지정 취소 요청. 단, 학교가 교장 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학기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계속 지정될 것을 요청함

※ 학교 심사 결과 일정점수(70%)를 얻지 못하면 교육청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지 않음

□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

- 학교 심사 결과와 교육청 심사 결과를 합산*하여 추천된 후보자의 최종 순위와 점수를 명기하여 교육감에게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
- * 학교 심사 50%, 교육청 심사 50%를 반영하여 합산
- 심사대상자가 2인 이하일 경우, 심사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교육감에게 추천
- 심사 결과, ‘후보자 모두 공모교장 자격에 미달한다’ 라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교육감이 공모학교 지정 철회. 단 학교가 교장 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교육감에게 다음 학기에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계속 지정될 것을 요청

□ 교육감

- 교육(지원)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최종 순위를 고려하여 1명을 선정*하고, 임용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교육부장관에 임용제청 추천

* 교육감이 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순위자 중 1순위자가 아닌 자를 최종 1명으로 선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요청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

※ 학교·교육청 공모 심사 합산 결과 지원자가 일정 점수(85%)를 얻지 못하여 적격자가 없으면, 해당학교 공모 지정 철회

-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, 후순위자 1인을 재선정하여 임용결격사유를 확인한 후, 교육부장관에게 임용 추천하되, 상기와 동일한 경우 해당학교 교장공모 지정 철회

- 공모교장 선발 과정에서 물의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, 교육감은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공모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※ 단, 학교가 교장 공모를 계속 원하는 경우 공모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계속 공모 지정을 할 수 있으며, 그 동안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를 함

X

공모교장의 인사 관리

□ 공모교장의 임용권자(공모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음)

- 국립학교: 교육부장관(대학부설학교장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)
- 공립학교: 교육감

【 유의 사항 】

- ① 공모교장 임용예정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교류 임용되어야 할 자인 경우에는 국립학교의 공모교장 임용권자와 교육감이 사전에 협의를 거쳐 당해 학교에 임용
- ② 임기 만료 후 국립학교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(지원 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 임용권자의 동의 필요)

□ 공모교장의 임기: 4년

-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(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5항)
- 교장으로 근무 중인 자가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, 공모교장 임용 이전의 교장 임기 잔여기간은 소멸됨
- 공모교장은 임기 중 인사 조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할 수 없음

□ 공모교장의 임기 중 인사 조치

- 공모교장이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
 -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하거나,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할 수 있음
- 공모교장이 임기 중 일신상의 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교운영위원회에 “인사 조치 심의 요청” 을 하였을 때
 -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
- 공모교장으로 임명된 자는 임기 기간 동안 다른 직위로 전직할 수 없음 (2021. 3. 1.부터 적용, 기존 공모교장 임용자 포함)
- 공모교장의 징계는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징계령」 등 징계 관련 규정을 적용함

□ 임기 중 공모교장의 직이 해제된 자에 대한 사후 처리

-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.
- 당연퇴직(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), 직권면직, 명예퇴직, 징계면직되는 경우 별도의 신분보장 조치는 없음

- 의원면직의 경우, “임기만료 후 사후 처리”와 동일하게 처리
- 교장의 궐위(재임 중 면직, 징계 등)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,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교장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
- 임용권자가 공모교장의 직을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을 때는 교육부에 보고를 하여야 함

□ 임기 만료된 공모교장의 인사

-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하여야 함(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) 다만,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장·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(전직조항)에 따름
- ☞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는 공모교장으로 재직한 횟수에 관계없이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인 교감,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사를 말함 (교육부 교원정책과-7648(2016.12.26.))
- 공모교장 임기가 끝난 경우,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으로 지원 가능. 단,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자에 한함
- 교장 중임을 마치고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후 정년 전에 교장 임기가 만료(공모교장 임기 만료 전에 직을 면한 경우 포함)된 경우,
 -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 따라 원로교사로 임용될 수 있음

□ 공모교장의 평가

- 평가 대상: 초·중·고 공립학교 공모교장
- 평가 주기(중간평가: 2년차에 실시, 최종평가: 4년차에 실시)
 - ※ 공모교장 임기가 3년 미만으로 임용된 교장은 1회 실시 가능

○ 평가 관리 기구

- 교육청 공모교장평가관리위원회(시교육청)
- 역할: 평가 계획 및 운영, 평가단 구성, 관련 자료 수집,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
- 구성: 교육청 관계자, 학교 관계자,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교육감이 결정(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사, 전문가가 50% 이상이 되도록 구성)

○ 평가 내용: 직무수행 능력 및 성과, 학교민주주의 실현 과정

- 학교경영계획, 학교평가 결과, 학업성취도 등 학생 성과 향상도,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, 학교민주주의 실현 과정, 기타 표창 등 학교 운영 관련 실적 등
- ※ 학교구성원 만족도조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(교장) 결과 반영 가능
- ※ 학교경영계획은 교장공모제 임용 당시 계획한 내용이 학교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게 수정·보완되어가는 과정 및 결과가 반영 되도록 함
- 적격성 검증: 청렴도, 자질, 징계 여부 등 교장으로서는 적격성 여부

○ 평가 방법

- 자기평가, 현장평가(방문 면담, 전화 등), 성과평가
- 적격성 검증: 감사담당부서 등 의견 조회

○ 평가 결과 활용

- 중간 평가 결과 공모교장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에게 공모교장 직을 해제하는 조치 요청 가능
- 공모교장 평가결과 우수 사례 보급 및 컨설팅 운영
-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거나, 징계 등으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 발생 시 인사 조치
 - 학교: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교육감에게 인사 조치 요청
 - 교육감: 본인의 소명 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사 조치

□ 학교 및 교장에 대한 지원 방안

- 당해 학교 교사 총 정원의 50% 범위 내에서 교사 초빙 가능(2022학년도 기준)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청 ‘초빙교사 지침’에 따름

□ 징계

-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교육공무원징계령」 등 징계관련 규정을 적용함
- 재임 중 면직, 징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,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하여 임기 중 인사 조치 및 공모제 적용 취소 조치

XI 기타 사항

- 위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2022. 9. 1.자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따름 [중등교육과-10705(2022. 4. 19.)]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심사일시 및 단계별 심사대상자 통보 - 추후 해당기관에서 개별 통보
- 우편으로 응모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
- 지원자가 심사일에 코로나 19로 격리 중인 경우 학교와 교육청은 응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상세 내용 개별 안내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
 - 운영 및 총괄: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정향미(☎ 380-4313)
 - 접수: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(3층)